

# 외환거래기본약관

[외화송금, 외국통화매입, 외화수표 등의 매입(추심)거래]

이 외환거래 기본약관(이하 "약관"이라 합니다)은 부산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.)과 신청인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외환거래를 신속, 정확하게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.

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 매체에 비치·게시하고 신청인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제 1 조 (적용범위)

- 이 약관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 적용됩니다.
- 1. 외화송금
- 2. 외국통화 매입
- 3. 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
- 4.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거래

## 제 2 조 (실명거래)

- ① 신청인은 실명으로 거래해야 합니다.
- ② 은행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, 여권,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제 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.

### 제 3 조 (외화송금)

- ① 은행은 신청인이 따로 요청하지 않는 한 환거래은행(지급은행, 추심은행등 관련 은행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은 은행이 선정하기로 합니다.
- ② 은행은 환거래은행에 지급지시 등을 함에 있어서 통상어, 부호, 암호 등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신청인은 송금거래를 마친 때 지급지시서 사본 또는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여야 합
- ④ 신청인의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송금수표의 원본을 반환 받거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금취소확인서를 받은 후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실제 반환 받은 금액에서 은행 및 환거래은행의 모든 비용을 뺀 외화금액 또는 은행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
#### 제 4 조 (외국통화 매입)

- ① 은행이 외국통화를 매입한 후 위·변조통화임이 판명된 경우 신청인은 매입신청시 제출한 "외국통화 매입신 청서"에 근거하여 **외국통화금액**과 매입당시의 여신연체이율로 매입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한 **손해** 배상금을 곧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관계기관 등에 의해 몰수되거나, 사고재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위·변조통화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# 제 5 조 (외화수표 등의 매입 및 추심)

- ① 은행이 매입한 외화수표 등에 관하여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하거나 은행의 관련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**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**에 따라 다음 가호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  - 1. 외화수표 등의 기재 금액